

『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9일

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적용법령 변경(안 제2조, 제8조, 제12조, 제13조)
 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→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 - 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폐지 →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정
 - 「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」 → 「전자정부법」으로 개정
 -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5항 →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으로 변경

- 전자우편 이용, 자료제공, 포인트 관련 삭제(안 제3조, 제7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)
 - 공직자 통합메일(문화체육관광부)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ID 관련 삭제
 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료제공 관련 삭제
 - UMS시스템 서비스 종료에 따른 포인트 관련 삭제
- 전자 민원처리대상 확대(안 제9조)
 - 「전자정부법」 제10조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으로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“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”라는 단서 삭제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13조의2, 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
 - 「전자정부법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의 관련법령을 변경하고, 공직자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, UMS시스템 등 행정서비스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삭제,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, 제8조, 제12조, 제13조에서 관련법령을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3조, 제7조,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에서 웹메일 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전자우편 ID이용, 홈페이지 자료제공 및 포인트 관련 내용을 삭제 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 「전자정부법」 제10조에 의거 전자 민원처리 시 전자적 민원 신청대상민원 대상의 단서를 삭제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「개인정보 보호법」(’11.3.29제정, ’11.9.30시행), 「전자정부법」(’07.1.3제정, ’07.3.1시행) 등 본 조례의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(’16.3.1종료), UMS시스템(’15.12.11종료) 등 행정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규정을 개선,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